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법 제25조에서 위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1)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 정의 내 추가 필요

나.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세부절차 마련(안 제31조의2)

- 1)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신청·협의·교부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 또는 대체 등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제5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가의 지원)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추진일정 및 총사업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및 연도별 집행계획서(자체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의 집행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집행내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매출전표 등 집행액별 증명서류

2. 지원금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입출금 내역 및 이자 발생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집행내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 능 보완 또는 대체 등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을 설치하는 사업 및 이와 관 련된 사업</u>
<u><신 설></u>	<u>제31조의2(국가의 지원) ① 법 제 25조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u> <u>1.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u> <u>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u> <u>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u>

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지
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
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추진일정
및 총사업비가 포함된 사업계
획서

2.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산출내
역서 및 연도별 집행계획서
(자체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다)

3. 그 밖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문서
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의 집행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집행내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매출전표 등 집행액별 증명서류

2. 지원금 관리계좌의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및 이자 발생내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집행내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

	<u>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118